[공고번호: 세종-성장사다리-01]

`23년도 세종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세종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5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세종특별차치시장, 세종테크노파크원장

□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11.9억원(국비 8.33억원, 지방비 3.57억원)
 - 프로그램별 기업 당 총 20,000천원~30,000천원 규모의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상세내역은 프로그램별 붙임 상세내역 참고)
 - 지원프로그램 총규모 대비 정부지원금 10%이상 기업현금부담 ※ 예) 총 사업비 33,000천원 = 정부지원금(30,000천원)+기업부담금(3,000천원) ※ VAT는 신청기업에서 별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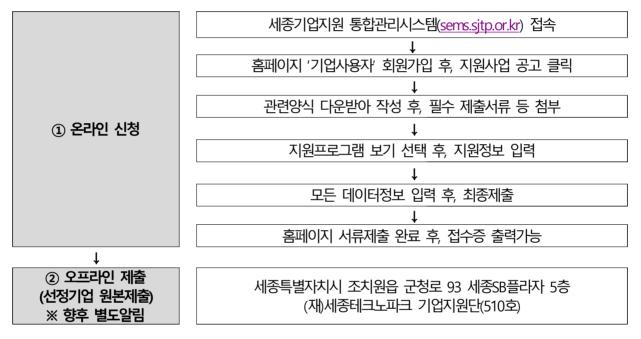
○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총 53개사 선발

지원대상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비고
POST-BI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시제품제작, 컨설팅,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인증· 시험분석, 디자인, 마케팅 등	11개사
수출초보	맞춤형 수출지원	해외시장조사, 해외인증, 전시회 및 기술지원, 통·번역, 전담PM, 연계 등	7개사
도약기업	사업화 촉진 지원	기술지도,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특허지원, 디자인 지원, 마케팅, 전시회 등	13개사
스타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화지원	시제품제작, 컨설팅,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인증· 시험분석, 디자인, 마케팅 등	21~22년 스타기업 20개사
선도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화지원	컨설팅,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인증·시험분석, 디자인, 마케팅 등	22년 1차 선도기업 2개사

- (신청자격) 세종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축산업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및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 등 별첨 참고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관(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②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신청방법 : 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SEMS) 홈페이지 접수



※ 지원프로그램별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내용은 등 별첨 참고

③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예비진단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 ※ 지원 프로그램별 평가방법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첨 참고
- **(평가기준)** 지원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별첨 참고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 (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기업	지역사업평가단 확인	3
2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1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1
5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TP 확인	2
6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사업자등록증	1

4 유의사항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매출, 수출, 신규고용 등)
- 신청서 접수 후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및 심사하고, 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 최종 선정 후에는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수행계획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지원금은 심의결과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
 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및 지자체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을 수행한 경우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주력산업육성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ㅇ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이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 컨소시엄 구성 기업 간 사업 추진이 불성실 등 원활하지 않은 경우

5 지원제외 대상

- 지원기간 중,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 한 경우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 인 경우 (중복지원)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 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이상, 국가R&D 참 여제한기업 및 대표자 등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참고)
 -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 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참고』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 4항 참고]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홍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 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 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기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 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 (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 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특별 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미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 에는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3년 5월 17일(수) ~ 2023년 6월 13일(화) 18:00

○ 신청서접수 : 2023년 5월 31일(수) ~ 2023년 6월 13일(화) 18:00

○ 사업설명회 : 2023년 5월 31일(수) 15:00 ~ 18:00

공 고 ▷	신청서 접수	통합공고 설명회	\Rightarrow	현장 실태조사	\Rightarrow	선정평가	\Rightarrow	선정결과 통보	\Rightarrow	협약 체결
5월 17일 ~6월 13일	5월 31일 ~6월 13일	5월 31일 15:00~18:00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추진상황에 따라 설명회 및 평가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및 온라인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지원대상	프로그램명	소속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선도기업	선도기업 지원사업	기업지원단	조창삼	044 050 2142	whckdtka333@
스타기업	스타기업 지원사업	기업지원단	선임연구원	044-850-2142	sjtp.or.kr
POST-BI 기업	POST-BI 지원사업	기업지원단	황현숙	044 050 2144	hha@aitmanler
도약기업	도약기업 지원사업	기업지원단	전임연구원	044-850-2144	hhs@sjtp.or.kr
수출초보/주력 기업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	기업지원단	신유철 전임연구원	044-850-2145	yc0326@sjtp.or.kr

참고

세종시 주축산업 KSIC 코드

산업명	코드번호 (KSIC 10차)	산업분류명	비고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2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기능성 바이오 소재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